



Analyst
손윤경, CFA
skcase1976@sk.com
02-3773-8477

포인트 결제 대금, 부가세 환급 관련 내용 정리

4Q16 롯데쇼핑은 그 동안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납부했던 부가세를 대규모로 환급. 그 동안 국세청은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예누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 왔음. 이에 롯데그룹을 비롯하여 신세계/이마트 그룹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 각각 2016년 8월과 10월에 대법원에서 승소. 2016년 12월 적립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시 과세방식을 개정.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

포인트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유통업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세청은 고객이 구매할 시점에 판매자가 포인트를 제공하고 2 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서 2 차 거래에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왔음. 이에 대해 롯데쇼핑과 신세계/이마트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 2016년 8월과 10월에 대법원에서 승소. 롯데쇼핑은 4Q16 실적발표를 통해 1,368 억원의 부가세 환급이 있었음을 밝힘. 롯데쇼핑과 같은 부가세 환급은 업체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포인트 결제 부가세 관련 소송		
연도	내용	
2013년	롯데그룹	2009년-2010년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 금액까지 국세청이 부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 (300억원 규모)
	신세계그룹	2009년-2011년 사이 사용된 적립포인트에 대한 신고/납부 부가치세를 돌려받는 소송 제기 (65억원 규모)
2016년 8월	롯데그룹 대법원에서 승소	- 4Q16 실적으로 1,368억원 환급(2016년 이전분 모두) * 백화점 972억원/할인점 244억원/롯데하이마트 100억원 [참고 기공되지 않은 신산식품/농/수/축산물은 부가세 면세 대상 규모에 비하여 하이마트의 환급분이 할인점에 비해 큼] - 2016년 해당분 208억원
2016년 10월	신세계/이마트 그룹 대법원에서 승소	- 4Q16 실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음
2016년 12월	부가세법 개정	2017년부터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 (자사가 적립하고 자사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해당 계좌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

부가세법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p>□ 마일리지* · 상품권**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p> <p>*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p> <p>**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p> <p>○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p> <p>*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p> <p>○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p> <p>*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p> <p>**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p> <p>※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세법 시행령 §61④</p>	<p>□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p> <p>○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p> <p>○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p> <p>*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p> <p>※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세법 시행령 §61①</p>

Compliance Notice

- 작성자(손윤경)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 단계 (6 개월 기준) 25%이상 → 적극매수 / 10%~25% → 매수 / -10%~+10% → 중립 / -10%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7 년 2 월 10 일 기준)

매수	95.65%	중립	4.35%	매도	0%
----	--------	----	-------	----	----